**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서**

※본 계약은 ‘갑’과‘을’은 아래 표시 부동산을 무상으로 ‘병’에게 대여하여 사용․수익하게 하고 반환하기로 하여 체결된

사용대차계약이다.

**제1조 부동산의 표시**

|  |  |
| --- | --- |
| * 1. **소 재 지** |  |
| 건물의 표시 | 구조 :  용도 :  면적 :  임대할부분 : |
| 토지의 표시 | 지목 :  (대지권목적인토지의)면적 :  대지권 종류 :  대지권비율 : |

제2조 당사자의 표시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임대인 ‘갑’ | 주 소 |  | | | | |
| 주민번호 |  | 전화 |  | 성명 |  |
| 임대인 ‘을’ | 주 소 |  | | | | |
| 주민번호 |  | 전화 |  | 성명 |  |
| 사용자 ‘병’ | 주 소 |  | | | | |
| 주민번호 |  | 전화 |  | 성명 |  |

제3조 사용용도와 목적 ‘병’은 위 부동산을 용법에 따라 사용․수익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‘병’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‘갑’과 ‘을’의 해제의 통보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 사용대차기간 본 계약의 사용대차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다.

제5조 공과금부담 ‘갑’과 ‘을’과 ‘병’은 위 부동산을 공동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면서 사용․수익하기로 한다

제6조 손해배상 ‘병’은 본 계약상 또는 ‘병’의 사용목적 또는 영업행위에 기인한 경우와 ‘병’이 부동산을 점유․관리하는 중에 ‘병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과‘을’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하기로 한다.

제7조 해제권의 유보 ‘병’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‘갑’과‘을’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‘갑’과‘을’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서상의 ‘병’의 연락처로 전자적 방법(핸드폰 문자, e-mail 등)에 의하여 발송된 때에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.

제8조 원상회복 사용대차기간의 만료, 기타 적법하게 사용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‘병’은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‘갑’과‘을’ 또는 ‘갑’과‘을’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.

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고,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임대인(갑) | 서명 및 날인 |
| 임대인(을) | 서명 및 날인 |
| 임차인(병) | 서명 및 날인 |